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데서 고려할 문제

김 세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제때에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선집》제10권 중보판 118폐지)

불법침해손해보상책임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적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자극하는 법적통제의 주요한 형태이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적, 보상적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수단으로 된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지우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그것은 불법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량이 곧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액수로 되기때문이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것은 무엇보다먼저 손해 계산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손해를 정확히 확정하자면 그것을 재는 옳바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어떻 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같은 불법침해사건 에 대하여서도 발생한 손해량이 서로 다 르게 확정될수 있다.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시간기준, 장소기준, 가격기준 등이 포함된다.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 한 기준에는 우선 시간기준이 있다.

시간기준은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중 사 후손해의 경우에 의의를 가진다.

사후손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해의 질과 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후손해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손해량이 달리 확정되게 된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계산 하는가 하는것은 손해의 량을 정확히 확정 하여 손해입은자의 재산적리익을 원만히 회 복시켜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후손해의 경우 법적의의를 가지는 시점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과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점이 있다. 여기서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계산, 확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허물이 있는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허물책임원칙의 필연적요구이다. 손해의 확대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허물로 인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손해발생시점의 손해량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확대된 손해량에 대해서도 마땅히 가해자가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처음 발생시킨 손해량만 보상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결과발생에 아무러한 허물도 없는 피해자가 확대된 량만큼 책임져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하여 알면서도 그것을 방임하였다면 사정은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허물도 없는 조 건에서 그에게 확대된 손해부분을 감수하 도록 하는것은 민법상의 허물책임원칙에 어 긋난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자기의 허 물로 발생한 손해전량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해확정의 시점을 손해의 확대 가 정지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사후손해인 경우 손해계산의 기 준시간으로는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점 을 선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 한 기준에는 또한 장소기준이 있다.

일련의 불법침해사건들에서는 가해행위 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이 여러 장소와 관 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느 장소를 기 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발생한 손해량이 달 리 확정되게 된다.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보상량확정에서 장소기준문제는 해당 사건과 이러저러하게 련 관되는 서로 다른 장소중에서 어느 장소 를 손해계산 및 확정의 기준으로 정하겠 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건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량을 확정하는데서 장소기준을 옳바로 선정하는것은 피해자에게 실지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할수 있는 기초를 주고 나아가서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신속정확히 해결할뿐만아니라그들에게 안정성과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장소로는 여러 곳이 될수 있다. 해당 재산의 소재지, 침해한 재산을 처분한 곳(례하면 훔친 물건을 처분한 장소), 수송중에 있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발송지나 도착지, 소송제기받은 재판소의 소재지, 피해자의 거주지등을 들수 있다. 어느 장소를 손해량확정의 장소기준으로 삼겠는가 하는것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산이 훼손, 멸실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동산의 소재지를 손해계산의 장소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침해된 동산의 소재지가 손해의 가치를 적중하게 평가할수 있는 장소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그것이 소재하고있는 장소환경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며 그 가치에 따라 거래된다. 따라서 손해량 역시 해당 동산이 소재하고있는 장소환경에서 그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동산이 침해된 곳과 침해한 동산을 처분한 곳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산이 침해된 장소를 손해계산의 장소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가 실지 손해본것

만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당 리득을 막고 사건이 등가보상의 원칙에 맞 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산이 류동과정에 침해된 경우(례하면 철도화물수송도중 화물이 분실된 경우)에 는 손해량계산의 장소기준을 해당 화물의 도착지로 해야 한다.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 착지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내진것이 므로 마땅히 그 가치는 도착지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침해한것으로 하여 발생한 손 해인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장소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이동할수 없다는 데로부터 불법침해행위나 손해발생과 같 은것들이 대체로 그 소재지에서 일어난다. 이동할수 있는 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 가 그 동산이 구체적으로 위치하고있는 장 소마다 달리 평가될수 있다.

그러나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수 없다. 때문에 부동산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손해량확정의 장소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는 측면에서 보아도가장 합리적이다.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 한 기준에는 또한 가격기준이 있다.

가격기준을 바로 정하는것은 침해된 재 산의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해당한 보상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 자의 민사적권리를 원만히 실현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가격기준을 옳바로 설정해야 불법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할수 있는 기준을 주고 나아가서 제기된 사건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원만히 보상해주는데로 지향되게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제48조에서는 《공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 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 해보상액을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수 매가격 같은것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조문을 통하여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상액은 가해자, 피해 자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 액은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같 은것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한다.

재판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의거하는 기준에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수매가격, 외화가격 등이 있다.

재판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는 가 격기준에는 첫째로, 국정가격이 있다.

국정가격은 해당한 재산에 대하여 국가 가 정한 가격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절대다수 제품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기업소들에 의하여 생산된다.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은 당연히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영기업소들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한 불법침해인 경우에는 국가가유일적으로 정한 국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량을 확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재판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는 가 격기준에는 둘째로, 시장가격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시장가격이 존재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 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과도적 특성으로부터 개인들이 부분적으로 개인 부업경리를 하는것을 허용하고있으며 그 러한 생산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있다.

이러한 개인부업경리에 의해 생산되는 농 토산물의 경우 그 가격은 국가가 정하는것 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호 상관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국가로서는 이런 농토산물이 자신이 직접 생산한것이 아니므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수 없으며 다만 착취적요소가 자라나는것을 막기위하여 가격하도를 정해줄뿐이다.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침해시 피해자의 손해크기나 가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상 금의 액수에 대하여 국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 역에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 할수 있다.

시장가격을 가격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물품의 거래가격, 류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수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는 가 격기준에는 셋째로, 침해된 재산의 수매가 격이 있다.

수매가격도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가격의 한 형태로서 국정가격, 시장가격과 함께 가격기준으로 리용될수 있다. 수매가격은 국정가격이나 시장가격이 설정되여있지 않는 일련의 상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수매기관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다. 국정가격이 설정되여있지 않는 상품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매가격에 준하여 손해량을 확정할수 있다.

재판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는 가 격기준에는 넷째로, 외화가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수입상품에 대한 불법침해가 이루어진 경 우 손해량은 외화가격에 준하여 확정해 야 한다.

일련의 경우 재판소가 손해량확정에서 의거할수 있는 가격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들이 있을수 있다. 실례로 명승 지나 천연기념물과 같은 대상에 대하여서 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가격기준을 설정하 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공화국손해보상법 에서는 침해대상에 따르는 단위당 가격선 정을 재판심리에서 직접 정하기 불가능한 대상들에 대하여 손해량을 확정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설정하고있다.

공화국손해보상법은 지하자원이나 산림 자원, 동식물자원, 관광자원, 수산자원을 침해한 경우와 농경지를 침해한 경우,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감독기관, 국가관리기관이 손해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침해대상이 국가적 및 사회적리익과 관련된 특수한 공적대상인 경우에는 불법침해손해보상을 피해자인 국가앞에 시키되 해당 분야를 감독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 나서게 한다.이렇게 특수한 공적대상들에 대해서는 재판외적인 보상관계로 처리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절차로 다시 처리할수 있게 한다.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을 당사자들이 그보다 높게 합의하는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정가격도 설정되고 시장가격도 설정 되여있는 경우 그 대상의 구체적원천에 기 초하여 손해보상량을 확정할수 있다.

그리고 화폐가 교환된 경우에는 침해당 시 가격에 해당하게 교환된 화폐량으로 가 격을 정한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것은 다음으로 불법침해 로 피해자가 손해만 본것이 아니라 일정 한 리익도 얻은 경우 보상해야 할 손해량 을 어떻게 확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련의 불법침해사건들에서는 가해자의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것과 함 께 리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불법침해로 피해자가 손해만 본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익도 얻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보상금에서 가해행위로 그가 얻은 리익부분을 제외시키는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얻은 리익에는 재산의 증가 나 지출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리익들이 포 함된다. 불법침해로 피해자가 손해와 함께 리익도 얻는 경우 가해자가 물어야 할 보상금 액수에서 피해자가 얻은 리익만큼 공제시키는것은 손해보상의 본질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당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켜주자는것이지 결코 입은 손해보다 더 큰 리익을 얻게 하자는것이 아니라는것과 관련된다.

피해자가 가해행위로 얻은 리익이 입은 손해의 크기와 같은 경우 그의 보상청구 권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보다 작은 경우 에는 그 부분만큼 공제된다.

이렇게 하는것은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 보상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지워 지는것을 막고 당사자들사이에 등가성의 원 칙에 기초한 재산거래관계가 이루어질수 있 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뿐만아니라 손 해보상청구 및 리행에서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해당한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한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등가성의 원칙이나 손해보상제도의 설정목적에 비추어볼 때 불 법침해로 피해자가 손해만 본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익도 얻는 경우 가해자가 물어 야 할 보상금에서 가해행위로 그가 얻은 리 익부분을 제외시키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불법침해로 손해와 함께 리익도 얻는 경우 가해자가 물어야 할 보상금에서 얻은 리익만큼 공제하게 하는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보편적으 로 인정하는 적용규칙으로서 손해보상제 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것은 다음으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는 경 우 보상해야 할 손해량을 어떻게 확정하 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상책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는것으로 하여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는 보상책 임을 의미한다.

일련의 불법침해사건들에서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함께 피해자의 주관적인 허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보상책임을 어떻게 확정하겠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할수 있다. 즉 피해자의 허물이 손해의 발생을 초래한 경우 그 허물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며 손해의 확대를 추동한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부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지워지는것을 막고 분쟁사건이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되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 공화국민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손해보상법 제4조에서는 《재산이나 인 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것을 가 능한 조건에서 막는것은 피해자의 의무이 다. 이 의무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 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손해보상법의 이 규정 은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허물이 있는 경우 그 허물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보 상책임이 그만큼 고려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서술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는 경우 가해자 또는 손해보상의무자의 보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는것은 민사책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허물책임원칙의 구현이라고 볼수 있다.

허물책임원칙은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사이의 재산거래관계에서 허물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우는 원칙으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재산적책임을 지우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물론 가해자는 자신의 허물있는 행위가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물로 인한 손해부분까지 보상하게 하는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허물정도에 맞게 각자가 져야 할 책임 또는 부담해야 할 손해후과에 대해 확정 할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자기의 허물행 위가 조성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보상책임 을 지게 되며 피해자라고 해도 손해의 확 대에 허물이 있다면 그의 보상청구권은 그 만큼 제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허물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가해자의 보상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것은 가해자에게 지나친 재산적부담이 가해지는것을 막고 사건이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